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143

발의연월일: 2021. 11. 4.

발 의 자:조승래·강선우·김정호

맹성규・양정숙・윤영찬

이상헌 · 정일영 · 조정식

최인호 · 최종윤 · 한준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울산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첨단과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산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 바이오, 신소재 분야가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울 산과학기술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울산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이전, 사업화의 촉진 등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울산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기술의 이전, 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추진할 별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혁신과 관련한 울산과학 기술원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2조 및 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협동연구 및 외국과의 교육·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를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연구교류, 기술의 이전, 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 ② 울산과기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
-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울산과기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울산과기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2조의3(창업지원) ① 울산과기원은 교원·직원·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첨단	제1조(목적)
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	
계와의 <u>협동연구 및 외국과의</u>	<u>협동연구, 외국과의 교</u>
교육·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육·연구교류, 기술의 이전, 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	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
기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을	<u>으로써</u>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수익사업 등) ① 울산과기	제22조(수익사업 등) ①
원은 <u>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u>	<u>ग</u> झे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	
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u><신 설></u>	② 울산과기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
	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
	<u>장된다.</u>
<u><신 설></u>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
	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울산과기원의 목적 달성을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울 4 제1항 또는 제2항에-----산과기원의 운영과 연구에 충 당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 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 한다.
- 제2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 화 촉진) 울산과기원은 연구결 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 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 제22조의3(창업지원) ① 울산과기 원은 교원·직원·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 로 정한다.